국민대학교 KOOKMIN UNIVERSITY | 평생교육원 SCHOOL OF LIFELONG EDUCATION

결재	담당자	실 장

수강료 분할 납부 신청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분납사유			
1차 분납일 (개강전)	~ 20 년 월 일	1차 분납금액 (실납부액의 1/3 해당 금액)	
2차 분납일 (개강후 2주이내)	~ 20 년 월 일	2차 분납 금액 (실납부액의 1/3 해당금액)	
3차 분납일 (개강후 4주 이내)	~ 20 년 월 일	3차 분납금액 (실납부액의 1/3 해당금액)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학기 수강료 납입을 위 사항에 맞추어 등록을 필할 것을 서약하며, 3차 분납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장학금 또는 미등록 취소,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 각종 증명서 발급 중지 등)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 (인)
보 호 자 : (인)
주임교수 : (인)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

수강료 분할 납부 확약서

1. 대상 : 재학생

※ 분납신청 후 지연 납부자는 다음 학기에 분납신청을 할 수 없음

2. 분할 납부 신청

가. 방법 : 학교 방문(평생교육원 교학팀), 팩스, 등기 우편 발송

나. 신청기간 : ~ 2017. 08. 30. 15:00

3. 분할 납부 횟수 및 납부 방법

가. 분납횟수 : 3회 (제4항의 납부기간 참고)

나.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 우리은행 327-120897-01-046 (예금주: 국민대학교)
- 카드결재 : 삼성카드, 국민카드 (평생교육원 교학팀 방문 결재)

4.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기간준수)

가. 1차 : 개강 전 (~ 20 년 월 일), 수강료의 1/3 해당 금액

나. 2차 : 개강 후 2주 이내 (~ 20 년 월 일), 수강료의 1/3 해당 금액

다. 3차 : 개강 후 4주 이내 (~ 20 년 월 일), 수강료의 1/3 해당 금액

5. 미등록 제적 (미납부)

정해진 기간내에 각 차수별 분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미등록 제적되며, 당해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6. 주의사항

가. 분할 납부신청자가 환불신청 할 경우 수강료를 완납해야 함

나. 환불규정 :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액 계산

다. 2017년 3월 31일까지 수강료를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시 발생되는 불이익 (장학금 또는 미등록 취소, 성적 불인정, 각종 증명서 발급 중지 등)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확약서	※ 위 내용을 읽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보호자와 본인은 위 1~6항 내용 모두 숙지하였으며, 기간 내 수강료를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휴대폰번호 : 본 인 : (인) 휴대폰번호 :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귀하